

#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정당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83
----------	------

제출년월일 : 2015. 11. 20.

제출자 : 정승현 의원 외 20인

## 1. 제안이유

- 회의규칙의 편제를 조문 체계에서 장·절·조 체계로 전면 개편함.
- 혼재되어 있던 기존 규정들을 회의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회의규칙의 규정 성격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개·폐회식 근거 마련 (안 제4조)
-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근거 신설 (안 제6조)
- 산회 선포 후 당일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13조)
- 의사일정의 변경내용을 명확히 함. (안 제17조)
- 의원발의 의안의 연서 서명방법 및 서명 철회규정을 명확히 함. (안 제19조)
-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안 비용추계 규정을 신설함. (안 제20조)
- 의안의 상정시기를 신설함. (안 제21조)
- 의안을 전산망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마련 및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의안 신설 (안 제22조)
- 시장이 제출한 의안의 수정 또는 철회 요구 근거 신설 (안 제29조)
- 의안의 번안동의의 요건 명확화 및 시장이 제출한 의안의 번안 근거 신설 (안 제30조)
- 5분자유발언을 안건 심의가 일부 또는 모두 종료한 후에 허가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39조)
- 표결 및 표결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규정함. (안 제46조, 제52조)
- 의장이 의장석에서 투표할 수 있는 근거마련 등 투표절차를 상세히 규정함. (안 제50조)

- 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 원안을 표결하지 않도록 명문화 (안 제51조)
- 회의록 작성기재 및 배부공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안 제53조~제56조)
- 위원회의 주민청구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한 청구인의 대표자 여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배부기한을 명시함. (안 제61조)
- 위원회에서 재정상의 추가 조치를 수반하도록 수정한 경우 비용추계자료를 심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안 제67조)
-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규정을 신설함. (안 제75조)
- 시정질문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안 제77조)
-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 시 본회의 연설 근거규정을 신설함. (안 제80조)
- 의원의 체포나 구금 시 청가 및 사직 규정을 명확히 함. (안 제81조~제82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규정을 신설함. (안 제95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함.

**3. 개정규칙안 : 붙임**

**4. 관련법령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없음**

**6. 기타 참고사항 : 없음**

#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당선이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개·폐회식)** ①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의 경우에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의회는 폐회식을 별도로 거행하지 아니하며, 그 회기의 마지막 본회의 산회를 폐회식으로 갈음한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당해 연도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제7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으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실시 전에 10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8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채임한다.

**제9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0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3장 회의

#### 제1절 개의·회기·의사일정 등

**제11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2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중이라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3조(산회)** ① 의사일정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상의 위기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6조(의사일정)** ①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삭제 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 제2절 의안 및 동의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 제출하거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안·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의안에 첨부되는 발의 또는 찬성의원 서명부의 서명은 의원 자필로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의원이 제3항에 따른 서명 사실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철회의 효력은 철회이유서 제출과 동시에 발생한다. 이 경우 발의된 의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제20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과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의안의 상정시기)** ①의안은 회기 시작 7일전까지 접수되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위원회가 예비 심사한 의안과 재희부되는 의안, 의제가 된 의안의 수정안, 수정예산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다.

1. 의장이나 임시의장 또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
2. 의장이나 부의장의 불신임 결의안
3.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4. 회기 중에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5.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의원 청가 (5일 초과의 경우를 말한다) 동의의 건
9.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10. 회기 결정의 건
11. 휴회나 폐회에 관한 건
12. 의원이 동의하는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
13. 재의의 건
14.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의 건
15. 위원회의 제출의안
16.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7.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8.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19.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20. 그 밖에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

제23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4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5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6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조례안의 취지·주요 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의 방법에 의한 공고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입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27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8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이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9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안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으로 상정이 되면 의제가 된 것으로 본다.

제30조(번안) ① 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의안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31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2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3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 제3절 발언

제35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 또는 신상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

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이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6조(발언의 장소)** ①의원은 발언대에서 발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8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9조(5분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정 및 시정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가 일부 또는 모두 종료한 후에 허가할 수 있다.

②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의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5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제40조(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발언시간의 제한)** ①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2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토론의 통지)** ①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4조(의장의 토론참가)** ①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5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4절 표결**

**제46조(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7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자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의 투표종결 선포전까지 재석하여 출석버튼을 눌러서 출석이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할 수 있다.

**제48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9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투표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제50조(투표절차)** ①투표용지에 의하여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투표용지에 의하여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투표의 유·무효 판정, 투표수 확인 등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투·개표상황을 점검·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

**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 투표용지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명패의 수가 투표용지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차이나는 명패의 수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⑤ 의장은 의장석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⑥ 전자투표는 의장이 투표 시작을 선포하면 출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⑦ 전자투표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로 종료되며, 투표시간 안에 찬성·반대·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투표결과로 처리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된다.

**제51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 **제5절 회의록**

**제53조(회의록)**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 ③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4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이 서명·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날인한다.

②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5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안산시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에 임시회의록이 게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③명사·법규의 조문·숫자 등 확실한 사실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부분은 발언자의 정정요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정정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④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6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회의록은 안산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은 비밀이 요구되거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포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4장 위원회

제57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8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9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0조(위원회의 제안)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61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한 사람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제출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충실한 설명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⑥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제62조(위원의 발언) ①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

②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3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4조(의사·의결정족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5조(연석회의) ①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연석회의는 안건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6조(공청회)** ①위원회는 중요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안건을 예산 또는 기금상의 추가 조치를 수반하도록 수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서에 그 안건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위원회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8조(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9조(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및 수
4. 출석하지 않은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또는 중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의 성명
6. 심사 안건명
7. 의사

8.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③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70조(비공개 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71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시장의 시정연설과 소관 국장의 취지설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는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3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끝나면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5조(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는 예산안 및 결산

에 관한 제71조부터 7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장 시장 등의 출석·답변 및 연설

**제76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서면으로 회의 시작 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시정에 관한 질문)** ①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시정질문은 의원의 원에 따라 일문일답의 방식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하되, 시정질문 요지서를 송부한 후에는 질문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③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질문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10분이내의 보충질문을 2회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⑤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내용 등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하고, 시장은 서면 답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시정질문 방식의 순서는 윤번제로 정하며, 시정질문 방식에 따른 의원의 질문순서는 접수된 순서에 의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8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9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0조(본회의 연설)** 국내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장 등 이에 상응하는 주요인사가 의회를 방문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장 의원의 청가·결석·사직 및 자격심사**

**제81조(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나 구금시에는 정부로부터 통보된 영장사본을 청가서의 제출로 본다.

②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안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 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2조(사직)** ①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④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3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에서 자격상실의 의결이 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85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 제8장 질서 및 중계방송

**제86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7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의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88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9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90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91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 한다.

②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동안 방청할 수 있다.

④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2조(방청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상태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93조(방청인의 금지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7. 회의장안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94조(녹음·녹화 등)** ①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게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5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① 의장은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 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계 방송할 수 있다.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장 징계

**제9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 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9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96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기 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8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9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

를 접수한 때에는 자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 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b>&lt;신설&gt;</b>	<b>제1장 총칙</b>
제1조(목적) (생 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등록) (생 략)	제2조(등록) (현행과 같음)
제3조(의석배정) ①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u>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u>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u>않을 때에는</u>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u>의회 운영위원회와</u> <u>아니할</u>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u>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u>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4조(개·폐회식) ① <u>최초 임시회의 경우에는</u> -- 행하며,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의회는 폐회식을 별도로 거행하지 아니하며, 그 회기의 마지막 본회의 산회를 폐회식으로 갈음한다.
<b>&lt;신설&gt;</b>	<b>제5조(선서) (현행과 같음)</b>
<b>&lt;신설&gt;</b>	제6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당해 연도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b>&lt;신설&gt;</b>	<b>제2장 의장과 부의장</b>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생 략)	제7조(의장·부의장의 선거) (현행과 같음)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생 략)	제8조(의장·부의장의 임기) (현행과 같음)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생 략)	제9조(임시의장의 선거) (현행과 같음)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생 략)	제10조(의장·부의장의 사임) (현행과 같음)
<b>&lt;신설&gt;</b>	<b>제3장 회의</b>



<b>&lt;신설&gt;</b>	<p><u>④의원이 제3항에 따른 서명 사실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철회의 효력은 철회이유서 제출과 동시에 발생한다. 이 경우 발의된 의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u></p>
<b>&lt;신설&gt;</b>	<p><u>제20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u> ①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p>
	<p><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u></p>
<b>&lt;신설&gt;</b>	<p><u>제21조(의안의 상정시기) ①의안은 회기 시작 7일전까지 접수되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위원회가 예비 심사한 의안과 재회부되는 의안, 의제가 된 의안의 수정안, 수정예산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b>제20조(의안의 회부)</b>	<p><u>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 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u></p>
	<p><u>제22조(의안의 회부) ①----- -----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 ----- ----- ----- -----</u></p>
<b>&lt;신설&gt;</b>	<p><u>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u></p>

	에 직접 부의할 수 있다.
	<u>1. 의장이나 임시의장 또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u>
	<u>2. 의장이나 부의장의 불신임 결의안</u>
	<u>3.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u>
	<u>4. 회기 중에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u>
	<u>5.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u>
	<u>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u>
	<u>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u>
	<u>8. 의원 청가 (5일 초과의 경우를 말한다) 동의의 건</u>
	<u>9.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 요구의 건</u>
	<u>10. 회기 결정의 건</u>
	<u>11. 휴회나 폐회에 관한 건</u>
	<u>12. 의원이 동의하는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u>
	<u>13. 재의의 건</u>
	<u>14.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의 건</u>
	<u>15. 위원회의 제출의안</u>
	<u>16.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u>
	<u>17.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u>
	<u>18.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u>
	<u>19.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u>
	<u>20. 그밖에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u>
제20조의2(특별위원회회부) (생략)	제23조(특별위원회 회부)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심사기간) (생략)	제24조(심사기간) (현행과 같음)
제20조의4(위원회의 제출의안) (생략)	제25조(위원회의 제출의안) (현행과 같음)
제20조의 5(조례안 예고) (생략)	제26조(조례안 예고) (현행과 같음)
제21조(동의의 의제성립) (생략)	제27조(동의의 의제성립) (현행과 같음)

<u>제22조(수정동의) (생략)</u>	<u>제28조(수정동의) (현행과 같음)</u>
<u>제23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생략)</u>	<u>제29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현행과 같음)</u>
<u>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u>	<u>② 시장은 제출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안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u>
<b>&lt;신설&gt;</b>	<u>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으로 상정이 되면 의제가 된 것으로 본다.</u>
<u>제24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u>	<u>제30조(번안) ① 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의안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u> <u>② 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u>
<b>&lt;신설&gt;</b>	
<u>제25조(안건심의) (생략)</u>	<u>제31조(안건심의) (현행과 같음)</u>
<u>제25조의2(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u>	<u>제32조(재회부) ----- -----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u>
<u>제26조(의안의 정리) (생략)</u>	<u>제33조(의안의 정리) (현행과 같음)</u>
<u>제27조(의안의 이송) (생략)</u>	<u>제34조(의안의 이송) (현행과 같음)</u>
<b>&lt;신설&gt;</b>	<u>제3절 발언</u>
<u>제28조(발언의 허가) ① (생략)</u>	<u>제35조(발언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u>

<p>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p>	<p>③ 발언 또는 신상에 대한 발언은 필요하다고</p>
<p>제29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36조(발언의 장소) ① 의원은 발언대에서 발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②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p>
<p>제30조(발언의 계속) (생략)</p>	<p>제37조(발언의 계속) (현행과 같음)</p>
<p>제31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생략)</p>	<p>제38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현행과 같음)</p>
<p>제31조의2(5분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의정 및 시정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 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39조(5분자유발언) ① 개의시부터 30분을 안 있다. 다만, 의장은 효율적 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안전 심의가 일부 또는 모두 종료한 후에 허가할 수 있다.</p>
<p>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 (생략)</p>	<p>제40조(발언횟수의 제한) (현행과 같음)</p>
<p>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생략)</p>	<p>제41조(발언시간의 제한) (현행과 같음)</p>
<p>제34조(보충보고) (생략)</p>	<p>제42조(보충보고) (현행과 같음)</p>
<p>제35조(토론의 통지) (생략)</p>	<p>제43조(토론의 통지) (현행과 같음)</p>
<p>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 (생략)</p>	<p>제44조(의장의 토론참가) (현행과 같음)</p>
<p>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생략)</p>	<p>제45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현행과 같음)</p>
<p>&lt;신설&gt;</p>	<p>제4절 표결</p>
<p>제38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p>	<p>제46조(표결의 선포) ① 제목을 의장석에서</p>
<p>제39조(표결의 참가) (생략)</p>	<p>제47조(표결의 참가) (현행과 같음)</p>

제40조(의사변경의 금지) (생 략)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투표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다른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2조(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④ 감표위원은 다른위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⑤ 전자투표는 의장이 투표 시작을 선포하면 출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⑥ 전자투표 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투표결과로 처리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된다.

제48조(의사변경의 금지) (현행과 같음)

제49조(표결방법) ① 전자투표

에 의한 기록 표결로

특별한

제50조(투표절차) ① 투표용지에 의하여 투표

할

② 투표용지에 의하여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투표의 유·무효 판정, 투표수 확인 등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투·개표 상황을 점검 개선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 투표용지의

④ 명패의 수가 투표용지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차이나는 명패의 수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⑤ 의장은 의장석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감표위원은

⑥ 전자투표는 의장이 투표 시작을 선포하면 출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⑦ 전자투표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로 종료되며, 투표 시간안에

<p>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생략)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u>표결한다.</u></p>	<p>제51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u>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u>  <u>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44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      는 의장은 그 결과를 <u>선포한다.</u></p>	<p>제52조(표결결과 선포) _____      _____ 의장석에서 선포한다.</p>
<p><b>&lt;신설&gt;</b></p>	<p><b>제5절 회의록</b></p>
<p>제45조(회의록 작성) ① (생략)</p>	<p>제53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p>
<p><b>&lt;신설&gt;</b></p>	<p>② <u>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u></p>
<p>②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생략)</p>	<p>제54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현행과 같음)</p>
<p>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      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      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p>	<p>제55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_____      _____ <u>안산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에 임시회의록이 게</u>  <u>시된 날부터 3일 이내에</u> _____</p>
<p><b>&lt;신설&gt;</b></p>	<p>② <u>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u></p>
<p>② (생략)</p>	<p>③ <u>명사·법규의 조문·숫자 등 확실한 사실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부분은 발언자의 정정요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정정하여 표기할 수 있다.</u></p>
<p>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수 있다.</p>	<p>제56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u>안산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에 게</u>  <u>시하는 방법으로</u> _____      _____      _____      _____</p>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신설>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생략)

제50조(본회의중 위원회 개최) (생략)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생략)

제51조의2(위원회의 제안) (생략)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신설>

### <신설>

제53조(위원의 발언) (생략)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생략)

제55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생략)

제55조의2(연석회의) (생략)

### 제4장 위원회

제57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현행과 같음)

제58조(본회의중 위원회 개최) (현행과 같음)

제59조(위원회에서의 동의) (현행과 같음)

제60조(위원회의 제안) (현행과 같음)

제61조(위원회의 심사) ①-----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한 사람의 -----

②-----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③-----

충실한 설명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대신-----

⑤ 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제62조(위원의 발언) (현행과 같음)

제63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현행과 같음)

제64조(의사·의결정족수) (현행과 같음)

제65조(연석회의) (현행과 같음)

<p><u>제56조(공청회) (생략)</u></p> <p><u>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생략)</u></p> <p>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u>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u></p>	<p><u>제66조(공청회) (현행과 같음)</u></p> <p><u>제6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u></p> <p>② _____ 내용을 _____</p>
<p><b>&lt;신설&gt;</b></p>	<p>③ 제1항의 안전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추가 조치를 수반하도록 위원회에서 수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서에 그 안전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위원회가 작성한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p><u>제58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전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u></p>	<p>④ _____ <u>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u> _____</p>
<p><u>제59조(위원회 회의록)</u></p>	<p><u>제68조(위원장의 보고) ①</u> _____</p>
<p><b>&lt;신설&gt;</b></p> <p>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p>	<p>기타 필요한 사항을 _____</p> <p><u>제69조(위원회 회의록)</u></p> <p>②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p> <p>③ _____ <u>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u> _____</p>
<p>③ (생략)</p> <p><u>제60조(비공개 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생략)</u></p>	<p>④ (현행과 같음)</p> <p><u>제70조(비공개 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현행과 같음)</u></p>
<p><b>&lt;신설&gt;</b></p> <p><u>제61조(예산안 등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u></p>	<p><b>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b></p> <p><u>제71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u></p>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기  
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5조(결산의 심사) ①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제61조제3항을 적용한다.

#### 제62조(예산안의 속점동의) (생략)

#### 제63조(예상약의 의결) (생략)

### 제64조(예산화의 재심요구) (생략)

〈시설〉

〈신설〉

### 제66조(시장등의 출석 요구) ①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본예  
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시장의 시정  
연설과 소관국장의 취지설명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취  
지설명을 듣는다.

### ③ 예산안과 결산을

## 〈삭제〉

#### 제7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현행과 같은)

#### 제73조(예산안의 의결) (협약과 같은)

#### 제74조(예산안의 재설정요구) (현행과 같음)

제75조(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장 시장 등의 출석·답변 및 연설

### 제76조(시장등의 출석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하  
여 약 했더니, \_\_\_\_\_

<p>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u>의장에게</u> 사전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p>	<p>----- ----- ----- <u>서면으로 회의 시작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u></p>
<p><u>제66조의2(시정에 관한 질문)</u> ② 시정질문은 의원의 원에 따라 일문일답의 방식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p>	<p><u>제77조(시정에 관한 질문)</u> ② ----- ----- ----- <u>하되, 시정질문 요지서를 송부한 후에는 질문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u></p>
<p>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u>요지와 소요시간</u> 등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u>시장에게</u> 도달되도록 하고 시장은 서면 답변서를 <u>24시간</u>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⑤ ----- ----- <u>내용</u> ----- ----- ----- <u>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u> <u>답변시간 24시간 --</u></p>
<p><b>&lt;신설&gt;</b></p>	<p><u>⑥ 시정질문 방식의 순서는 윤번제로 정하며, 시정질문 방식에 따른 의원의 질문순서는 접수된 순서에 의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u></p>
<p><u>제67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생 략)</u> <u>제68조(시장등의 발언) (생 략)</u></p>	<p><u>제78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현행과 같음)</u> <u>제79조(시장등의 발언) (현행과 같음)</u> <u>제80조(본회의 연설) 국내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장 등 이에 상응하는 주요인사가 의회를 방문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할 수 있다.</u></p>
<p><b>&lt;신설&gt;</b></p> <p><u>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b>제7장 의원의 청가·결석·사직 및 자격심사</b> <u>제81조(청가 및 결석) ① -----</u> ----- ----- <u>한다. 다만, 체포나 구금시에는 정부로부터 통보된 영장사본을 청가서의</u></p>

	제출로 본다.
제69조(사직)	제82조(사직)
<신설>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①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제83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u>제71조의</u>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①----- <u>제79조의</u> -----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 한다.	-----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생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u>제7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u>  <u>(생 락)</u></p>	<p><u>제90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u>  <u>(현행과 같음)</u></p>
<p><u>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생 락)</u></p>	<p><u>제91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현행과 같음)</u></p>
<p><u>제79조(방청의 제한) ①</u><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u></p>	<p><u>제92조(방청의 제한) ①</u><u>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u></p>
<p>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p>	<p>1. ----- <u>사람</u>  2. <u>음주상태에 있는 사람</u>  3. <u>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u></p>
<p><b>&lt;신설&gt;</b></p>	<p><u>제93조(방청인의 금지사항) -----</u></p>
<p><u>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u>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p>	<p>4. 음식물의 섭취나 <u>끼연행위</u>  5. 신문 기타 <u>서적류의 열독행위</u>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p>
<p><u>제81조(녹음·녹화등) (생 락)</u></p>	<p><u>제94조(녹음·녹화등) (현행과 같음)</u></p>
<p><b>&lt;신설&gt;</b></p>	<p><u>제95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①</u>의</p>
<p>장은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 의사리를 <u>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계 방송할 수 있다.</u></p>	<p>② <u>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b>&lt;신설&gt;</b></p>	<p><b>제9장 징계</b></p>
<p><u>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u></p>	<p><u>제9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u></p>
<p>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u>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u></p>	<p>③-----  -----  -----  ----- <u>법 제83조</u>  -----</p>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 제83조(징계의요구 또는 회부의시한)

(생략)

### 제84조(의사의 비공개) (생략)

### 제85조(심문 및 변명) (생략)

제86조(징계의의결과 선포) ①의장은 윤리특

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제9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현행과 같음)

#### 제98조(의사의 비공개) (현행과 같음)

### 제99조(심문 및 변명) (현행과 같음)

### 제100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